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가합519558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한화건설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6. 11. 25.

판결 선고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8,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11,8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1. 도흥공영 주식회사(이하 '도흥공영'이라 한다)와, 원고가 도흥공영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8공구) 중 본선 포장공사를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 1,309,000,000원, 선급금 240,900,000원, 계약보증금 130,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증

- 1)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도흥공영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흥공영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금액 240,9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선급금 보증'이라 한다).
- 2) 또한 피고는 2013. 7. 1. 도흥공영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액 130,9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이하 '계약 보증'이라 하고, 선급금 보증과 함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
- 3) 이 사건 각 보증에 적용되는 약관은 보증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 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보증금 청구

- 1) 이 사건 계약은 도흥공영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2013. 10. 18. 해지되었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7. 계약 보증금 130,900,000원의 지급을, 2014. 5. 20. 선급금 보증금 213,150,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의 심사자료 제출 요청 및 원고의 자료 제출

- 1) 피고는 계약 보증과 관련하여 2014. 3. 4. 및 같은 해 5. 12. 원고에게 계약서 및 내역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관련 자료, 손실 발생 입증 자료, 설계변경 및 ESC 관련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2)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계약서 및 내역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관련 자료, 손실 발생

입증 자료, 설계변경 및 ESC 관련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2. 원도급사가 발주자에 통지한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기성내역,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등 시공상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6. 2. 17. 시공상황자료 제출을 재요청하였으며, 2016. 4. 21. 원고가 발주처에 기성청구한 원도급기성청구서 및 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마. 피고의 보증금 일부 지급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30,900,000원, 선급금 보증금 213,150,000원 합계 344,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보증금 지급의무 및 그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도흥공영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보증금 213,150,000원, 계약 보증금 13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되는 사실, 피고가 2014년 3월 및 5월경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게 심사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5. 4. 30.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금에 관하여 2015. 6. 30.부터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21.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60일이 지난 2016. 6. 21.경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4년 3월 및 5월경 요청한 자료는 원고가 2015. 4. 30.에 모두 제출하였던 점, 이후 피고는 2015년 10월 및 2016년 2월경 시공상황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2016. 4. 21. 원도급기성청구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추가로 요청한 시공상황자료 등은 원고와 도흥공영 사이의 계약이행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원고와 원발주자 사이의 계약서 및 내역서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5년 10월, 2016년 2월경 및 2016. 4. 21.경 요청한 자료가 이 사건 각 보증금 지급에 관한 심사자료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의 추가 자료 요청이 원고가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약관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제충당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30,900,000원, 선급금 보증금 213,150,000원 합계 344,0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6. 6. 8. 기준으로 피고의 선급금 보증금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원금 213,150,000원, 지연손해금 12,055,204원(= 213,150,000원 × 6% × 345/366), 합계 225,205,204원이고, 피고의 계약 보증금 채무액은 보증원금 130,900,000원, 지연손해금 7,403,360원(= 130,900,000원 × 6% × 345/366) 합계 138,303,360원이다.

선급금 보증금	213,150,000원	12,055,204원	225,205,204원
계약 보증금	130,900,000원	7,403,360원	138,303,360원
합계	344,050,000원	19,458,564원	363,508,564원

피고가 2016. 6. 8. 지급한 344,050,000원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19,458,564원에 먼저 충당하면 324,591,436원(= 344,050,000원 - 19,458,564원)이 남게 된다. 다음으로 피고의 선급금 보증금 지급채무와 계약 보증금 지급채무는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행기가 동일하며, 지연손해금율도 동일하여 변제이익 역시 동일하므로, 위 324,591,436원은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채무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보증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324,591,436원은 선급금 보증원금에 201,094,796원(= 324,591,436원 × 213,150,000원 ÷ 344,050,000원), 계약 보증원금에 123,496,640원(= 324,591,436원 × 130,900,000원 ÷ 344,050,000원)이

충당되고, 충당 후 선급금 보증원금은 12,055,204원(= 213,150,000원 - 201,094,796원), 계약 보증원금은 7,403,360원(= 130,900,000원 - 123,496,64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각 보증원금 19,458,564원(= 선급금 보증잔금 12,055,204원 + 계약 보증잔금 7,40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이장욱

판사전명재